

2022년 1월 1일 시행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확대 (사업주용)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



Contents

I .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확대

<1> **(정의)** 노무제공자, 사업주

- 정의, 적용대상

<2> **(신고)** 성립 신고, 피보험자 신고 등

<3> **(납부)** 고용보험료 산정(부과) 및 원천공제(납부)

II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노무제공자, 사업주)

III .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

IV . 고용보험 업무수행기관 안내



I.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확대



<1> 정의

1_1. 노무제공자

1_2. 사업주

1_1.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221.1
시행

- ① 퀵서비스기사
- ② 대리운전기사

217.1
시행

- ①보험설계사, ②학습지 강사, ③교육교구 방문강사,
- ④택배기사, ⑤대출모집인, ⑥신용카드회원모집인
- ⑦방문판매원, ⑧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⑪건설기계조종사,
- ⑫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1> 정의

1_1. 노무제공자

1_2. 사업주

1_1. 노무제공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사업주) 배송 수단 관리 구분 필요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 신고하지 않음
(원천공제도 하지 않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택배기사)과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 정의

1_1. 노무제공자

1_2. 사업주

1_1. 노무제공자

소득기준

✓ 소득합산 신청
(22.1.1. 시행)

연령기준

-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당연 적용(즉,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
다만,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노무제공자(월보수액 80만원 미만)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합산한 소득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소득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기간은 당연 적용됨
- 다만, 노무제공자 본인이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 제외
- ❖ 적용확대 시행일인 22.1.1.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노무제공자는 적용 제외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연 적용



<1> 정의

1_1. 노무제공자

1_2. 사업주

1_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신고의무자 사례>



<유형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사인 경우

노무제공계약

노무제공자

- 퀵기사
- 배달기사
- 대리운전기사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플랫폼사)

- 퀵서비스업체
- 배달대행업체
- 대리운전업체



고용보험 신고·납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퀵서비스업체
- 배달대행업체
- 대리운전업체

①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

- 사업주 규모(피보험자인 근로자수 10명 미만), 노무제공자 소득(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등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납부하는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방식 지원

② 플랫폼사 보험사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에 유의

<유형2> 노무제공플랫폼사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플랫폼사 특례 적용)

노무제공계약

노무제공자

- 퀵기사
- 배달기사
- 대리운전기사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퀵서비스업체
- 배달대행업체
- 대리운전업체



플랫폼 이용계약

플랫폼사

고용보험 신고·납부

플랫폼사

①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

- 사업주 규모(피보험자인 근로자수 10명 미만), 노무제공자 소득(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등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사업주, 종사자가 직접 신청
공단이 사업주,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② 플랫폼사 보험사무 지원금 지급



<2> 신고
 2.1. 성립 신고
 2.2. 피보험자 신고

2.1.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성립신고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 (신고 기한) 최초 노무제공자 노무제공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대상별(근로자·노무제공자) 각각 별도 성립신고
 - 22년 최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성립신고는 1월 14일까지 신고 필요
- (신고 정보)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공단) 노무제공자 전용
 사업장관리번호 부여

(서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목적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예입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한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계좌 사전신고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한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할 계좌입니다. (지금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용자(대표자)	주소	
고용보험 지원 신청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율 신청합니다(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종)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 필요여부 체크)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번호)
	보험사우대행기관 (명칭)		
	주원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관리번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		성립일
	사업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계속 <input type="checkbox"/>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재해발생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주원 사업장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주원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보험사우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관리번호	

* 고용보험 및 산재해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제48조의3제6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산재해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_____ 년 월 일
 보험사우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2> 신고

2_1. 성립 신고

2_2. 피보험자 신고

2_2. 피보험자 신고

- 피보험자 관리
(일반/단기)

일반 노무제공자

- (정의)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서식) <1>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2>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서
- (신고 기한)
 - <1> 취득, <2> 상실: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3> 월보수액 통보서: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신고 정보) (공통) 사업장관리번호
노무제공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1> 취득: **취득일, 취득월의 월보수액**, 직종, (외국인) 체류자격과 국적 등
 - <2> 상실: **상실일, 상실사유**, 이직월의 월보수액 등
 - <3> 월보수액: 노무제공월의 **월보수액** 등

단기 노무제공자

- (정의)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서식) 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신고 기한) 노무제공월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 정보) 사업장관리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종, 노무제공일자, 월보수액, (외국인) 체류자격과 국적** 등

<2> 신고

2_1. 성립 신고

2_2. 피보험자 신고



2_2. 피보험자 신고

- 피보험자 관리
(일반)

일반 노무제공자_취득 신고

- (서식) <1>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신고 기한) 취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취득일) ① 최초 노무제공 개시일 또는
②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달의 초일(매월 1일)
- '①' 최초 노무제공 개시월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 '②'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제외되다가
소득변동으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 (신고 정보) 사업장관리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종,
취득일, 취득월의 월보수액, (외국인) 체류자격과 국적 등

취득일 결정 사례

- (사례1) 배달대행기사의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22.1.15. 이고, 1월 기사 총수입이 300만원인 경우

→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므로 취득일은 22.1.15.

$$\begin{aligned} \clubsuit \text{ 월보수액} &= \text{총수입} - (\text{총수입} \times \text{직종별 경비율}) \\ & * \text{경비율 } 30.4\% \text{로 가정} \\ &= 300\text{만원} - (300\text{만원} \times 30.4\%) \\ &= 300\text{만원} - 91,200\text{원} = 208,800\text{원} \end{aligned}$$

- (사례2)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22.1.15.이고 1월의 월보수액이 75만원인 경우 → 1월 적용 제외
- 2월의 월보수액이 150만원인 경우 → 취득일은 22.2.1.

<2> 신고

2_1. 성립 신고

2_2. 피보험자 신고



2_2. 피보험자 신고

- 피보험자 관리
(일반)

일반 노무제공자_상실 신고

- (서식)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신고 기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상실일) ① 노무제공계약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②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달의 초일(매월 1일)
 - '①' 노무제공 종료월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 '②' 취득 중이었으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 (신고 정보) 사업장관리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종,
상실일, 상실사유, 이직월의 월보수액 등
- * (이직월)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된 달

상실일 결정 사례

- (사례1) 배달대행기사의 노무제공계약 종료일이 22.7.15. 이고 7월 기사의 월보수액이 200만원인 경우
→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므로 상실일은 22.7.16.
- (사례2) 노무계약 기간이 22.1.5.~22.7.15.이고 당연취득 되어 22.1.5.부터 취득되었으나, 5월 기사의 월보수액이 75만원인 경우
→ 상실일은 22.5.1.
(즉, 피보험자격은 22.1.5.~22.4.30. 기간 유지됨)
- (사례3) 노무제공계약 종료일이 22.7.15.이고 7월 기사의 월보수액이 75만원인 경우
→ 상실일은 22.7.1.

<2> 신고

2_1. 성립 신고

2_2. 피보험자 신고



2_2. 피보험자 신고

- 피보험자 관리
(일반)

일반 노무제공자_월보수액 통보

- (서식)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서
- (신고 기한)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신고 정보) 사업장관리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노무제공월의 월보수액 등
- 미신고시 최근 신고된 보수액으로 보험료 부과
- 월보수액 통보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공단에서 직권 취득, 상실
처리함

→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22. 4월 이후 가능

노무제공자_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

- (서식)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 노무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변경
- (신고 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 정보) 사업장관리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등

신고 서식별 전자신고용 레이아웃

(서식)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반노무제공자> 취득신고 레이아웃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예술인)
[]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입직 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핵심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_____ 접수일: _____ 처리기간: _____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_____ 명칭: _____ 단위사업장 명칭: _____
 소재지: _____ 우편번호(): _____
 전화번호: _____ 팩스번호: _____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_____ 명칭: _____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 _____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부호	자격 취득일	국적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류 자격	월(평균)보수액	
1								
2								

*** 직종별 추가 입력 번호**

직종별 추가 입력 번호	방문판매원	임직유형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배송수단	① 월 기준 소득·일수 이상 ② 사업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신고
화물차주	①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미만) ②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이상) ③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제외) ④ 견인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① 화물자동차 ② 승용·승합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도보·자전거·저하철 ⑤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기계종류	① 불도저 ② 굴삭기 ③ 로더 ④ 지게차 ⑤ 스카레어퍼 ⑥ 덤프트럭 ⑦ 기중기 ⑧ 모터그레이더 ⑨ 롤러 ⑩ 노상인양기 ⑪ 콘크리트베탱 플랫폼 ⑫ 콘크리트파쇄기 ⑬ 콘크리트삼포기 ⑭ 콘크리트 펌프 ⑮ 아스팔트믹싱플랜트 ⑯ 아스팔트파쇄기 ⑰ 아스팔트삼포기 ⑱ 골재삼포기 ⑳ 쇠삭기 ㉑ 공기압축기 ㉒ 전굴기 ㉓ 광타 및 광발전기 ㉔ 자갈채취기 ㉕ 준설선 ㉖ 특수건설기계 ㉗ 타워크레인 ㉘ 콘크리트믹서트럭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취득·입직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_____
 년 월 일

보험구분	가입자정보		고용보험				
(0:전체/1:산재/3:고용)	*주민등록번호	*성명	*월평균보수	*취득일	*직종부호	국적	체류자격

직종부호
957 퀵서비스기사
958 대리운전기사

당연적용만 가능
F2 영주, F5 거주
F6 결혼이민

신고 서식별 전자신고용 레이아웃

(서식)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년	성명	주인(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상실일
		상실사유
		예술인 보수총액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이직일
		후대전화번호
1		
2		
3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상실·이직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일반노무제공자> 상실 신고 레이아웃



상실일
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 날

보험구분 (0:전체/1:산재/3:고 용)	성명	주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지역번호)	전화(국번)	전화(뒷번호)	고용보험상실연월일	고용보험상실사유 구분코드	고용보험구체적사유	고용보험해당연도 보수총액 (예술인)	고용보험전년도 보수총액 (예술인)	고용보험현월보 수액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전월보 수액 (노무제공자)
------------------------------	----	-------------------------	----------	--------	---------	-----------	------------------	-----------	---------------------------	--------------------------	--------------------------	--------------------------

월보수액
이직일(노무제공 종료일)이 포함되는 월의 월보수액 작성

전월 월보수액
이직일(노무제공 종료일)이 포함되는 월의 전월 월보수액 작성
(월보수액통보하지 않은 경우만 작성)

신고 서식별 전자신고용 레이아웃

(서식)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단기 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레이아웃



보험구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신고월	국적코드	체류자격코드	전화(지역번호)	전화(국번)	전화(뒷번호)	직종코드	1월	31일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보수총액 과세소득)	임금총액	이직사유코드
------	----	-------------	-----	------	--------	----------	--------	---------	------	----	-----	------	-------------	--------------	---------------	------	--------

당연적용만 가능
F2 영주, F5 거주
F6 결혼이민

[]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 단기 예술인)
확인신고서 ([] 단기 노무제공자) (년 월 분)
[]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서(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공통사업장	하수급인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공연 관련 계약 사업 등의하수급인만 해당함)	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직종 부호																			
건설기계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일					일					일					일				
원					원					원					원				
보수총액																			
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제125조의9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리

- ♣_1. (적용 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_2. 외국인 노무제공자
- ♣_3. (적용 제외)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_4. 이중취득 허용



(적용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22.1.1.(시행일) 기준 65세이상이면 적용 제외
 - 다만, 65세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자가 65세 이후에 계속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더라도 적용

사례별 판단(일반 노무제공자 기준)

- (사례1) 생년월일이 1957.11. 이전인 노무제공자가 업체와 1개월 이상 계약하여 기사로 일하는 경우
→ 65세 이상자로 적용 제외
- (사례2) 생년월일이 1957.2.1.인 노무제공자가 2022.1.5.부터 업체와 1개월 이상 계약하여 기사로 일하는 경우
→ 2022.1.5. 현재 64세이므로 당연 적용
- (사례3) 생년월일이 1957.1.1.인 노무제공자가 2022.1.5.부터 업체와 1개월 이상 계약하여 기사로 일하는 경우 단, 5년 전부터 계속하여 타사업장 근로자로 취득됨
→ 65세 이상이더라도 당연 적용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리

- ♣_1. (적용 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_2. 외국인 노무제공자
- ♣_3. (적용 제외)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_4. 이중취득 허용



(외국인 노무제공자) 체류자격별 적용

- ① (당연적용) 영주(F-2), 거주(F-5), 결혼이민(F-6)
- ② 그 외 체류자격은 적용 제외

피보험자 신고 관련 안내

- 외국인 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주민번호 13자리 중 7번째 자리 숫자가 "5", "6"인 경우)
 -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체류자격과 국적 정보 관리
- (공단) 신고된 외국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유관기관 입수정보를 통해 당연적용 여부 검증 예정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리

- ♣_1. (적용 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_2. 외국인 노무제공자
- ♣_3. (적용 제외)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_4. 이중취득 허용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을 받는 자가 퀵·대리 기사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 겸업을 하더라도 적용 제외

피보험자 신고 관련 안내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의 경우에는
 - 노무제공자가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구분 관리 필요**
- **(공단)** 신고된 노무제공자에 대해 유관기관 입수 정보를 통해 당연적용 여부 검증 예정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리

- ♣_1. (적용 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_2. 외국인 노무제공자
- ♣_3. (적용 제외)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_4. 이중 취득 허용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 근로자↔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예술인 간 **이중 취득 모두 허용**
 - 다만, 근로자↔근로자 간 이중취득은 불가
 - 일반 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노무제공자를 당연 취득
* 가입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중취득 가능
 - 단기 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선택 또는 원하는 경우 이중취득 가능
- **같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로 이중 취득은 불가**

이중취득 예시

- (예시) 노무제공자 vs 예술인 vs '갑' 사업 근로자(월 평균보수 300만원) vs '을' 사업 근로자(월평균보수200만원)인 경우
 - 노무제공자, 예술인, '갑' 사업의 근로자로 이중 취득



<3> 납부

3_1. 보험료 산정·부과

3_2.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1>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 (정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를 뺀 금액

* (필요경비) 직종별 경비율 고시 예정(12월말)

- 월보수액 산정식 = 총수입(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비과세 소득 - (총수입 X 직종별 경비율)

<2> 노무제공자의 보험료율 및 월별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1.4%
 - 실업급여사업만 적용(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미적용)
 - 22.7.1.부터는 1.6% 적용 예정
- (보험료의 부담) 노무제공자(0.7%)와 사업주(0.7%)가 각각 1/2씩 부담
 - 22.7.1.부터는 노무제공자(0.8%)와 사업주(0.8%) 각각 1/2씩 부담 예정
- 월별보험료 산정식 = 월보수액 X 0.7%(노무제공자 부담분)
+ 월보수액 X 0.7%(사업주 부담분)



<3> 납부

3_1. 보험료 산정·부과

3_2.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3> 하한 기준보수

- **(하한 기준보수, 133만원)** 일반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이 13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부과
 - 기준보수의 60%인 798,000원을 실제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함
 - (예시) 월보수액이 100만원인 경우, 월별보험료는 월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 월별보험료는 18,620원
 $133\text{만원} \times 0.7\% + 133\text{만원} \times 0.7\% = 9,310\text{원} + 9,310\text{원} = 18,620\text{원}$
- 단기노무제공자는 하한 기준보수 미적용(실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4> 보험료 상한액

- **(보험료 상한액)** 노무제공자의 보험료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으로 부과
 -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고시
 - 월 441,150원(연간 5,293,800원)



<3> 납부

3_1. 보험료 산정·부과

3_2.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월보수액과 월별보험료 산정 예시

➤ (사례1) 일반노무제공자인 음식배달기사의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22.1.15. 이고, 1월 총수입이 300만원인 경우 (경비율 30.4%로 가정)

→ 월보수액은 2,088,000원

$$\begin{aligned} \text{월보수액 산정식} &= 300\text{만원} - (300\text{만원} \times 30.4\%) \\ &= 300\text{만원} - 912,000\text{원} = 2,088,000\text{원} \end{aligned}$$

* 경비와 보수 산정 시 원단위 미만 절사임에 유의

→ 월별보험료는 29,220원

$$\begin{aligned} \text{월별보험료 산정식} &= 2,088,000\text{원} \times 0.7\% + 2,088,000\text{원} \times 0.7\% \\ &= 14,616\text{원} + 14,616\text{원} = 14,610\text{원} + 14,610\text{원} = 29,220\text{원} \end{aligned}$$

* 보험료 산정 시 원단위 절사임에 유의

월보수액 산정과 하한 기준보수 적용 예시

➤ (사례1) 일반노무제공자인 대리운전기사의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22.1.15. 이고, 1월 총수입이 150만원인 경우(경비율 21.4%로 가정)

→ 월보수액은 1,179,000원이나, 하한 기준보수 적용

$$\begin{aligned} \text{월보수액 산정식} &= 150\text{만원} - (150\text{만원} \times 21.4\%) \\ &= 150\text{만원} - 321,000\text{원} = 1,179,000\text{원} \end{aligned}$$

→ 월별보험료는 18,620원

$$\begin{aligned} \text{월별보험료 산정식} &= 133\text{만원} \times 0.7\% + 133\text{만원} \times 0.7\% \\ &= 9,310\text{원} + 9,310\text{원} = 18,620\text{원} \end{aligned}$$



<3> 납부

3_1. 보험료 산정·부과

3_2.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보험료의 정산

- 매년 3.15.까지 전년도 신고 월보수액에 대해 확인을 통해 보수총액신고 한 것으로 봄
- 즉, 월보수액 신고로 보험료 정산 완료
(월보수액 기준으로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므로 월보수액 신고로 정산 같음)

- 월보수액 수정 필요시 월보수액을 재통보(수정이 필요한 노무제공자, 수정이 필요한 해당 월만 재통보)
- 월보수액 미신고 시 월보수액 신고에 대한 월별 이력관리를 통해 월보수액 신고 누락월에 대해 신고 안내 예정

<3> 납부

3_1. 보험료 산정·부과

3_2.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일반 노무제공자

❖ 월단위 원천공제 필요

❖ **(주의)** 월보수액이 하한 기준보수(133만원) 보다 작은 경우에는 133만원으로 산정한 월별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야 함.

- 즉,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 133만원 미만인 경우

기사 부담 보험료는 9,310원, 사업주 부담 보험료도 9,310원으로 각각 해당 금액을 원천공제
공단은 18,620원으로 보험료 부과하고 사업주는 18,62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 유의

단기 노무제공자

❖ 단계적 원천공제 필요

<1단계> 일단위 보수액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 산정후 원천공제(일정산)

<2단계> 월단위 보수액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 각각 산정 후 원천공제(월정산)

❖ 하한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고, 실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부과

<보험료 원천공제 및 보험료 산정 예시>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1> 일반 노무제공자(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주	기사	일자	콜순번	기사 수입	경비 (30.4% 가정)	① 보수액	기사 부담 보험료 (0.7%)	사업주 부담 보험료	월별보험료 총액
A1	R1	1	1	3,000					
			2	2,500					
			3	2,150					
			소계	7,650					
		2	:	:					
		:	:	:					
		31	:	:					
		월계			3,139,460	954,395.84 = 954,395	① 2,185,065	15,295.455 =15,290원	15,290원

(경비, 보수의 단수조정)
원단위 미만 절사

(보험료의 단수조정)
원단위 절사

- (월보수액 통보) "①"에 해당하는 월보수액을 이용개시 사업주별, 노무제공자별 레이아웃에 따라 월보수액을 공단에 통보
- (원천공제 및 보험료 납부) A1(사업주) 부담분으로 15,290원, R1(기사) 부담분으로 15,290원을 공제하여 공단이 부과하는 30,580원 납부
- (하한 기준보수 적용) "①"에 해당하는 월보수액이 80만원이상 13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
월별보험료는 18,620원이며, 기사 부담액은 9,310원, 사업주 부담액은 9,310원으로 원천공제하고, 공단이 부과하는 18,620원 납부

<보험료 원천공제 및 보험료 산정 예시>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2> 단기 노무제공자(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공유콜을 수행하는 사람)

사업주	기사	일자	콜순번	기사 수입	경비 (30.4% 가정)	① 보수액	기사 부담 보험료 (0.7%)	사업주 부담 보험료	월별보험료 총액
A1	R1	1	1	3,000	912	2,088	(경비, 보수의 단수조정) 원단위 미만 절사		
			2	2,500	760	1,740			
			3	2,150	653.6	1,497	(월보험료의 단수조정) 원단위 절사 또는 절상		
			소계	7,650	2,325.6 = 2,325	5,325	37.275 = 30원	30원	
		2	:	:	:	:	(경비, 보수의 단수조정) 원단위 미만 절사		
		:	:	:	:	:			
		31	:	:	:	:	(월보험료의 단수조정) 원단위 절사		
		월계			3,139,460	954,395.84 = 954,395	① 2,185,065	15,295.455 = 15,290원	15,290원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1월의 노무제공일자와 "①"에 해당하는 월보수액을 이용개시 사업주별, 노무제공자별 레이아웃에 따라 공단에 신고
- (원천공제 및 보험료 납부) <1단계> 일단위 원천공제. 즉, 1일자 A1(사업주) 부담분 30원, R1(기사) 부담분 30원을 원천공제 등
 <2단계> 1월 A1(사업주) 부담분 15,290원, R1(기사) 부담분 15,290원을 원천공제하고, 공단이 부과하는 30,580원 납부
- 하한 기준보수는 적용하지 않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사업주

<사업주 정보>

-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주명,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자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취득·상실일(노무제공일), 월보수액
- (외국인) 체류자격, 국적 등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관리**
 - 사업장 관리번호 부여 등
 - 월별보험료 산정 부과

▪ 노무제공자피보험자격관리

-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납부관련 자동이체 관리
- 월별보험료 고지서 송부
- 고용보험료 납부처리
- 고용보험료 체납관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실업급여사업 관리
 - 구직급여 신청처리 등
- 출산전후급여 관리
 - 출산전후급여 신청처리 등



Ⅱ.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노무제공자, 사업주)

<5>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보수액 23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22년 고시 금액 230만원)**

지원 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 기적용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 6억원 이상,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

지원 절차

- 1) **플랫폼 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각각 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사업주별, 노무제공자별 별도 신청)
- 2) **플랫폼 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최초 고용보험 성립신고(보험료 지원신청에 체크) 시, 또는 별도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 기존에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도 별도 지원신청을 추가로 하여야 함

<5>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방법

-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 보험료 부과

- ① 법정 신고기간내에 취득 신고 및 월보수액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
- ②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1월 보험료 3.10일 납부)

지원 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신규와 기존 구분없이 지원)

유의 사항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사업의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각각 이중취득 된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 모두 지원

(예) 근로자 100만원(A), 노무제공자 100만원(B), 예술인 100만원(C)

- * 각각의 보수가 230만원 미만으로 A,B,C 모두 지원대상
- * 각각의 사업장에 36개월간 지원이 가능함



Ⅲ.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_1. 구직급여

6_2. 출산전후급여



수급 요건

- **실업 상태일 것(피보험자격상실)** :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기여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
(이전에 타사업장에 취득되어 있었던 다수 취득자가 대상)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는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_1. 구직급여

6_2. 출산전후급여



지급 수준

-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 다수 취득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합산하여 산정함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작성**
 - (사례1) 일반 노무제공자(R) '22.3.11.취득, '22.12.20. 이직한 경우
→ 4월 ~ 11월(8개월) + $[(21+20)/30](1.37\text{개월}) = 9.37\text{개월}$
 - (사례2) 단기노무제공자는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text{개월}$		
	3개월			1.3개월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_1. 구직급여

6_2. 출산전후급여



다수 고용형태 종사자

다수 고용형태 종사자 피보험 단위기간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 근로자로 구직급여시-근로자 피보험기간, 예술인으로 구직급여시-예술인 피보험기간,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시-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중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 취득이 된 경우

$$1 - [\text{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12\text{개월}] \leq [\text{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 / 180\text{일}] + [\text{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9\text{개월}]$$

(사례1)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9개월, 근로자로 90일(유급일) 종사한 경우

$$\rightarrow 0.25(=1-9\div 12) \leq 0.5(=90\div 180)\text{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사례2)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4개월, 근로자로 120일(유급일), 예술인으로 4개월 종사한 경우

$$\rightarrow 0.67(=1-4\div 12) \leq 0.67(120\div 180)+0.44(=4\div 9)\text{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_1. 구직급여

6_2. 출산전후급여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감액 기준

- 노무제공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중지하거나 감액
- 지급 중지(전액 감액) : 당연가입 대상인 경우,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 감액 기준 : 지급중지 외의 경우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감액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_1. 구직급여

6_2. 출산전후급여



지급 요건

-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지급 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지급 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IV. 주요 Q & A





<Q&A> '일' 산정 기준, 노무제공자 정보 외부 제공 관련

Q. 피보험자격 신고를 위한 '일(日)' 산정 기준은?

(현황) 심야·새벽 시간대 호출발생으로 퀵(일반, 음식배달), 대리운전 업체의 경우 '일(日)' 산정 기준이 사업주별 정산시간대에 따라 상이
* 당일 5:00부터 익일 5:00 전까지, 당일 7:00부터 익일 7:00 전까지 등

A) '일(日)' 기준은 00:00~24:00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 일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1개월 중 11일 이상 노무제공하여야 피보험 단위기간을 1개월로 산정하므로 노무제공일에 대한 '일(日)' 산정 공통 기준을 마련함
- (일반노무제공자) 최종 노무제공일 판단 시 00:00~24:00를 기준으로 산정(최대 1일 증가 예상)
- (단기 노무제공자) 월별 노무제공일이 연속되는 경우 월말 1일 증가가 예상됨. 다만 업체내 프로그램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운영중인 일산정 기준으로 노무제공일(보수 포함)을 산출하되, 월별 최대 1일 증가 등 고려

Q.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보수액 신고로 인해 검업수행, 소득노출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용보험 신고로 인해 고용노동부, 공단이 보유한 기사의 정보가 외부로 제공되는지 여부?

- #### A)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취득된 노무제공자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소득, 피보험기간, 취업 사업장 정보 등)는 원칙적으로 타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등에 따르지 않고는 외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현재까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등 외부기관에 제공되지 않음
 - 다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스템)에 피보험 자격 및 소득 정보는 제공됨



<Q&A> 콜수수료 외 지급되는 기사의 수입에 대한 보수 판단

Q. 콜무, 마일리지, 프로모션, 인센티브 등 수입의
보험료 산정대상 보수 판단 기준은?

<1> 콜무

(사례) 콜수행 시 기사가 모든 수익을 지급받고, 사업주는 소득이 없는 경우

<2> 마일리지

(사례) 사업주↔기사 간 마일리지 지급
사업주의 전화번호로 동일 고객이 대리운전 5회 이용 시
1회 무료 이용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인센티브

(사례) 사업주↔기사 간 인센티브 지급(이벤트성 지급)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을 통한 보너스 포인트 지급.
기사App 내 포인트 계정으로 지급하기도 하며, 사업소득
으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 (픽크타임 출근이벤트) 4주간 픽크타임 출근기사 중 랜덤 추첨
하여 보너스 포인트 지급 등

<4> 프로모션

(사례) 사업주↔기사 간 인센티브 지급
기사 확보, 영업 확장 목적으로 이벤트 실시



<Q&A> 콜수수료 외 지급되는 기사의 수입에 대한 보수 판단

A. (원칙) 사업주와 고객간 약정한 금액(서비스 이용 대가)에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간 약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을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로 봄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약정에 따른 수입 배분에 있어 노무제공 시 최소한 자신의 노무제공 대가로 확정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로 산정
- 그 밖의 특이 지급건에 대해서는 위의 원칙에 따라 지급 사안별로 판단 예정

<1> 콜무, 마일리지 콜 → 보수로 판단

- (콜무)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로 판단

* 당초 사업주와 고객간 약정된 대리운전비용 중 기사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판단

- (마일리지)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로 판단

* 마일리지는 사업주가 고객에게 제공한 금전적 가치로서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는 고객을 대신하여 사업주가 대가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해당 마일리지 중 노무제공자 소득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에 해당함

<2> 인센티브, 프로모션 등에 대한 보수 판단

- (인센티브, 프로모션 등) 당초 사업주-고객 간 약정 금액(서비스 이용 대가), 사업주-노무제공자 간 약정 금액(콜 수수료 등)과 별도로 일시적 기준에 따라 이벤트성으로 소득이 발생되므로 보수에서 제외.

특히 사업주의 운영 또는 영업 홍보를 목적으로 지점 소속 기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은 보수에 해당하지 않음



V. 고용보험 업무 수행기관 안내

<7> 고용보험 업무 수행기관

7_1.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7_2.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고용보험업무 수행기관

기관	주요 업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 지원업무•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산정·부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등 담당• 피보험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7> 고용보험 업무 수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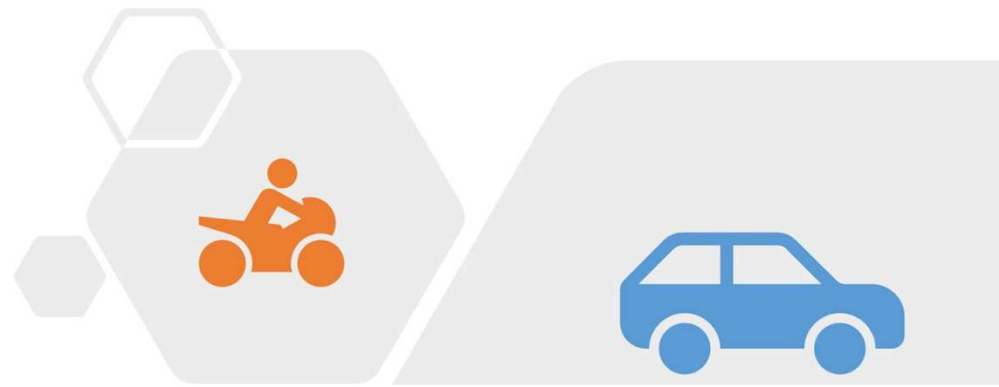
7_1.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7_2.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센터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2길 25(수송동, 연합뉴스빌딩) 11층			
	대표전화	(특고)02-6946-0500 (예술인)02-2097-9250	팩스번호	특고가입1부	0502-223-3102
				특고가입2부	0502-223-1203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및 강원지역본부 관할 지역 - 서울특별시, 강원도, - 경기도 외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경기도 기량군				
부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주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초량동, 아모레퍼시픽) 10층			
	대표전화	051-790-0300	팩스번호	특고가입1부	0502-661-1102
				특고가입2부	0502-661-1103
관할구역	부산지역본부 및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주소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635(삼산동, 엘림타워) 501호			
	대표전화	032-712-0500	팩스번호	특고가입1부	0502-451-1102
				특고가입2부	0502-451-1103
관할구역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경기도 외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 포천시·연천군·남양주시·구리시 제외)				
대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둔산동, KT&G) 7층			
	대표전화	042-718-0600	팩스번호	특고가입1부	0502-870-1102
				특고가입2부	0502-870-1103
관할구역	광주지역본부 및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역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감사합니다